

# TaxFlash



## **Gateway obligations under Tax Amnesty program 조세사면제도 과정 하에서의 Gateway 의무**

2016년 9월 5일, DGT는 조세사면제도의 적용을 위한 Gateway 보고를 위한 절차에 대한 규정 No.PER-12/PJ/2016(PER-12)을 발행하였다.

PER-12는 DGT에 보고하는 Gateway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.

- a) 특별 계정으로의 자금 개설과 유치
- b) 투자 유치 목적의 투자 계좌 개설
- c) 납세자의 투자 상태
  - 1. 월 단위로 보고
  - 2. Gateway 간의 자금이체 또는 투자가 있을 시

또한, Gateway 보고서는 외부 데이터 처리 부서의 본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 DGT에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.

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Gateway는 경고 서한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거나 Gateway 폐지할 수 있다.

## 공시와 공개 매수에 대한 예외 사항 (An exception to the requirement to disclose information and make a mandatory tender offer)

Bapepam-LK 규정 No.KEP-264/BL/2011(KEP-264)의 부록 3.a에 따라 상장회사의 새로운 지배주주는 상장회사의 인수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또한 공개 매수(tender offer)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 반면에, OJK(Otoritas Jasa Keuangan) 규정 N H .31/POJK.04/2015(POJK-31)은 지배주주가 변경된 상장회사는 신규 지배 주주에 대한 정보를 OJK에 통보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
조세사면제도 시행 지원의 일부분으로 OJK는 2016년 9월 2일에 규정 No.35/SEOJK.04/2016 (SE-35)을 발표하였다. 동 규정은 조세사면제도를 신고함으로써 인하여 상장회사의 신규 지배주주가 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의 적용 예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. SE-35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2017년 3월 31일로부터 20 영업일 이후에 효력이 종료된다.

조세사면제도를 신청하고 상장회사의 지배주주로 공시된 납세자는 다음의 서류를 OJK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a) 상장회사의 지분율 정보가 포함된 조세사면제도 승인서류의 사본
- b) 납세자 명의의 주식 계좌를 통해 모든 취득 자산들이 이전되었다는 확인 서한

### PSAK 70 : 조세사면제도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

2016년 9월 19일,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위원회(DSAK IAI)는 PSAK 70:”조세사면제도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”(PSAK 70)을 공표하였다. 동 기준의 공표 목적은 조세사면제도 법규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 규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. 자세한 사항은 링크된 PSAK 70 을 요약한 최신 [Accounting News Flash](#) 를 참조하길 바란다.

### ‘인도네시아 – 인도’ 신규 조세 조약

2016년 2월 5일, 인도네시아에서 외교 문서(Diplomatic Notes)를 송부함으로써 비준 서류의 교환이 완료되었으며 인도네시아-인도 조세 조약이 발효되었다. 2012년 7월 27일에 서명된 이 조약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7년 1월 1일, 인도의 경우 2017년 4월 1일자로 발효되며, 1987년 8월 7일에 서명된 조세조약을 대체하게 된다.

과세당국은 Circular Letter No.SE-31/PJ/2016을 통해 동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하였다. 신규 조세조약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# 1.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

The current WHT rates are 10% for a company that holds at least 25% of the shares or 15% in all other cases. Under the new tax treaty, the WHT rate will be 10% in all cases. 현재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%이상 보유한 주주인 경우 10%, 이외의 경우는 15%가 적용된다. 신규 조세 조약에서는 원천징수 세율은 지분율에 상관없이 10%가 적용된다.

## 2. *Technical service 에 대한 Royalty 와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*

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최대 15%에서 최대 10%로 변경되었다. 신규 조세 조약은 또한 Technical, Management, Consulting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도 동일하게 10%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## 3. *지점세(Branch Profit Tax)율*

지점세의 경우 현행 10%에서 최대 15%로 변경되었다. 동 변경사항은 오일과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자와 PSC(Profit Sharing Contract)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## 4. *국제 운송과 관련한 선박의 운영에 대한 세금*

신규 조세 조약에 따라, 국제 운송과 관련한 선박의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해당 기업의 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속한 거주국(일방체약국)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. 그러나 신규 조세 조약은 국제 운송과 관련한 선박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국가(타방체약국)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최대 50%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. 또한, 신규 조세 조약은 국제 운송시에 재화와 기계장치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(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기타 설비 포함)의 사용, 유지 및 임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권을 일방체약국에 부여하고 있다. 다만, 컨테이너가 타방체약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## 5. *주식에 대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*

신규 신규 조세 조약은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% 이상을 파생하는 주식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(capital gain)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였다.

## 6. *최근 정보 교환(EOI)*

신규 조세 조약은 EOI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한 국가가 해당 국가의 세무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, 양국은 동 정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 양국은 정보가 은행, 기타 금융기관, Nominee 또는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 및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는 사유로 만으로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.

## 7. *Limitation of Benefits 혜택의 제한*

신규 조세 조약은 조세조약의 혜택 실질 거주자에만 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조항을 포함한 Limitation of Benefits을 포함하였다. 동 조항은 조세 회피를 낮추기 위한 국내법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. 세무상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거주 기간 등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는 조세조약을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,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.

## 8. *징수 협조*

신규 규정은 양 국가 간의 세금 징수의 협조를 조항이 삽입되었다. 동 조항은 세금 징수 협조와 관련한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.

## Korean Business Desk Contact

정태훈 회계사 (taehun.jung@id.pwc.com)

박승찬 회계사 (park.seungchan@id.pwc.com)

박승찬 회계사 (park.seungchan@id.pwc.com)

## 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**Abdullah Azis**

abdullah.azis@id.pwc.com

**Adi Poernomo**

adi.poernomo@id.pwc.com

**Adi Pratikto**

adi.pratikto@id.pwc.com

**Alexander Lukito**

alexander.lukito@id.pwc.com

**Ali Widodo**

ali.widodo@id.pwc.com

**Andrias Hendrik**

andrias.hendrik@id.pwc.com

**Anton Manik**

anton.a.manik@id.pwc.com

**Antonius Sanyojaya**

antonius.sanyojaya@id.pwc.com

**Ay Tjhing Phan**

ay.tjhing.phan@id.pwc.com

**Brian Arnold**

brian.arnold@id.pwc.com

**Dany Karim**

dany.karim@id.pwc.com

**Deny Unardi**

deny.unardi@id.pwc.com

**Engeline Siagian**

engeline.siagian@id.pwc.com

**Enna Budiman**

enna.budiman@id.pwc.com

**Felix MacDonogh**

felix.macdonogh@id.pwc.com

**Gadis Nurhidayah**

gadis.nurhidayah@id.pwc.com

**Gerardus Mahendra**

gerardus.mahendra@id.pwc.com

**Hanna Nggelan**

hanna.nggelan@id.pwc.com

**Hasan Chandra**

hasan.chandra@id.pwc.com

**Hendra Lie**

hendra.lie@id.pwc.com

**Hyang Augustiana**

hyang.augustiana@id.pwc.com

**Kexin Lim**

lim.kexin@id.pwc.com

**Laksmi Djuwita**

laksmi.djuwita@id.pwc.com

**Lukman Budiman**

lukman.budiman@id.pwc.com

**Mardianto**

mardianto.mardianto@id.pwc.com

**Margie Margaret**

margie.margaret@id.pwc.com

**Otto Sumaryoto**

otto.sumaryoto@id.pwc.com

**Parluhutan Simbolon**

parluhutan.simbolon@id.pwc.com

**Peter Hohtoulas**

peter.hohtoulas@id.pwc.com

**Runi Tusita**

runi.tusita@id.pwc.com

**Ryosuke R Seto**

ryosuke.r.seto@id.pwc.com

**Ryuji Sugawara**

ryuji.sugawara@id.pwc.com

**Soeryo Adjie**

soeryo.adjie@id.pwc.com

**Sutrisno Ali**

sutrisno.ali@id.pwc.com

**Suyanti Halim**

suyanti.halim@id.pwc.com

**Tim Watson**

tim.robert.watson@id.pwc.com

**Tjen She Siung**

tjen.she.siung@id.pwc.com

**Turino Suyatman**

turino.suyatman@id.pwc.com

**Yessy Anggraini**

yessy.anggraini@id.pwc.com

**Yuliana Kurniadjaja**

yuliana.kurniadjaja@id.pwc.com

**Yunita Wahadaniah**

yunita.wahadaniah@id.pwc.com

[www.pwc.com/id](http://www.pwc.com/id)



[PwC Indonesia](https://www.linkedin.com/company/pwc-indonesia)



[@PwC\\_Indonesia](https://twitter.com/PwC_Indonesia)



[@pwcindonesia](https://www.facebook.com/pwcindonesia)



[PwC Indonesia](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pwcindonesia)



[pwc\\_indonesia](https://www.instagram.com/pwc_indonesia)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[maria.purwaningsih@id.pwc.com](mailto:maria.purwaningsih@id.pwc.com).

**DISCLAIMER:**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16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[www.pwc.com/structure](http://www.pwc.com/structure) for further details.